

2. 서울特別市鐘路區表彰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

2003. 11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2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11. 3)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)

가. 개정이유

○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표창방법 및 부상의 서식 중 불합리하게 규정된 서식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, 공적조서의 내용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의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8조)
- 공적조서의 서식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함(안 제13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 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